

[별표 1] <개정 2013.12.30>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 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 합법인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